

고시계
계
= 7
크
호

가
장
용
등
화
유
배
급
가
격
개
점
의
근

상
공
회

第 〇 號

갑

비 완 결	기 재 내	관 호	번 종	원 결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지행상주의

안	수접
단기	단기
1992년 2월 10일	년 월 일
시	
20	
실	
시정	

전명 가점응등화유배급가격 개정에 관한 건

(품의안)

본건에 관하여 금반상공부지시에 의하여 당시 석유류 제품가격이 개정됨에 따라 등화유도 종전

시
장
부
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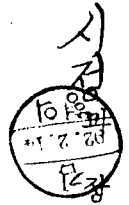


내무국
국
장



산업국
장

총무과



상공과
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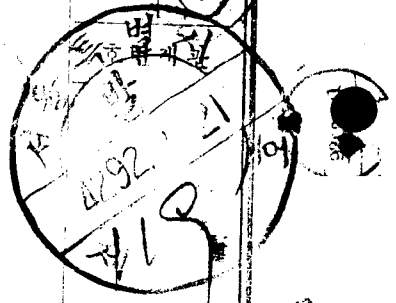


상무계

법제계

문서계

기안자



一도량당 八三〇환에서 八六九환으로 三〇환이
 인상되었어옵기 시내각석유판매상에서 환
 매하는 등화유를 좌기와같이 개정 실시하고저
 재결하여 주심을 양청하나이다

기

가정용등화유

一승(升)당

一一〇환

(종전가격 一〇〇환)

서울특구별시가정용등화유판매가격산출표

도람당	도람당	도람당	도람당	도람당	비
사업원가	부대비	배급수수료	산출금액	배급가격	비고
八, 六九〇.〇〇	一, 〇九九五.〇〇	一, 三〇三.〇〇	一, 〇九三.〇〇	一, 一〇〇.〇〇	승당가격의 1/10 환미만은 절사하였음
八, 三三〇.〇〇	一, 〇九九五.〇〇	一, 二五二.〇〇	〇, 七〇二.〇〇	一, 〇〇〇.〇〇	종전가격

(四元二角三厘) (四元二角三厘) (원가의 1.5%)
 (일승인된금액)

(고시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호

단기 4292년 2월 1일부터 냉보 가정용 등화
 유관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단기 4292년 2월 1일


서울특별시장 허정

가정응답화기
—응답
——환

(제2안) 통권

제안

시장

상공부 장관  알

본건에 관하여 단기간 2년 2월 1일부터
같이 개정 실시 하였음 기 보고 하나이다
별지 문서
취지 외

(고시문은 전부 할 것)
제안 (가정응답화기)
제안 (가정응답화기)
제안 (가정응답화기)

(제 3안)

부
—
권

시
장

서울특기별시^경유관매장조합연합회장

안

본전에 관하여 단기 四二九二년 二월 一일부터 가정용

등화유관매가격을 좌기와 같이 개정 하였으니

실시에 유루 없기를 기하시압

기

가정용등화유 一승당 一一〇화

(제 4 안)

통권

부시장

각국장

각구청장

알

동진

본건에 관하여 금반석유류가격인상에
 여가정응등화유판매가격을 개정하고
 수반하
 취별
 개지하
 와 같이 고시하였으나 양지하시안

저

(고시문을 첨부할 것)

(제5안)

부
편

산업국장

내무국장

동일

편

본건별지와 같이

고시되었으나

시보에 게재하여

주시기바라나이다

(고시문을 첨부할 것)